

#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○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 회생·파산 절차 내에서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유형 및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-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 사항의 유형 및 범위를 규정함(안 제9조제1항)
- 관리인대리 등에 관한 등기 시 기재사항 및 기재사항 변경 시 촉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9조제2항)
-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예규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9조제3항)

4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)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
2. 법 제205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
3. 법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
4. 법 제263조에 따라 이사 등의 선임, 유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

②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인대리, 법 제362조에 따른 파산관재인대리 및 법 제6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또는 제362조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
제10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)</p> <p>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도 회생계획의 수행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종료 전에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등기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채무자의 각 사무소 및 영업소(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)의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3항에 의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준용한다. 등기된 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된</p>	<p>제9조(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)</p> <p>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</li> <li>2. 법 제205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</li> <li>3. 법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</li> <li>4. 법 제263조에 따라 이사 등의 선임, 유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</li> </ol> <p>②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인대리, 법 제362조에 따른 파산관재인대리 및 법 제6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또는 제362</p>

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제2항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처분과 함께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본다는 취지의 등기를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.

제10조(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의 촉탁)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 그 보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.

1.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법 제3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
  2. 등기된 권리에 관하여 법 제35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
-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 또

조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
<삭 제>

는 법 제351조제1항이 규정하  
는 이사등의 재산에 속하는 권  
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준  
용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담당실	
연락처	(02) 3480 - 1349